

보 증 인 변 경 계 약 서

[채권의 표시]

채권자 ○○○(이하 갑이라고 함)으로부터 채무자 ○○○(이하 을이라 함)에 대한 20○○년 ○월 ○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부원금 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년 ○월 ○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채권과 기한 후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배상금채권.

제1조(보증계약) ○○○(이하 정이라 함)은 갑의 을에 대한 위 표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약정한다.

제2조(보증계약해지) 갑은 정과 이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표시 채권의 연대보증인 ○○○(이하 병이라 함)과(와)의 20○○년 ○월 ○일자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의 해지에 동의한다.

이상의 계약으로써 정은 갑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, 병은 연대보증 채무를 면하였음을 당사자간 확인하며, 서명·날인한 후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00년 0월 0일

채	주	소					
권 자	성 또 상	BO 기기어	ପ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-	전 화 번 호	
연 대	주	소					
보 증 인	성또상	면이	인	주민등록번호 또 는 사업자등록번호	_	전 화 번 호	